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여성동창회 회칙

제정 2016년 11월 5일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회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여성동창회로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회는 동문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와 동문 여성공학인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소재지) 본회는 본부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둔다.

제 2 장 사 업

제 4 조(사업) 본회는 제 2 조 목적을 달성하고자 아래와 같은 사업을 영위한다.

1.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행사
2. 동창회원 명부 및 관련 도서와 간행물 출간 작업
3. 모교 발전을 위한 장학사업
4. 기타 본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타 관련사업

제 3 장 조 직

제 5 조(임원) 본회 임원은 아래와 같이 조직한다.

1. 회장 : 1 명
2. 부회장 : 수석부회장을 포함한 약간 명
3. 총무 : 1 명
4. 회계 : 1 명
5. 간사 : 학과별 대표 약간 명
6. 감사 : 1명

제 6 조(회원) 본회는 다음 회원으로 조직한다.

1. 정회원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부 졸업자인 여성으로 한다.
2. 특별회원은 모교의 여성교원(퇴직자 포함)으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모교와 본 동창회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연고가 깊고 학식과 명망이 있는 자로서 총회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4. 준회원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부 재학 중인 여성으로 한다.

제 7 조(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가 있다. 단, 특별회원, 명예회원, 준회원은 의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않는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전반을 통할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총무는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한다.

제 8 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1. 회장과 수석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2. 회장과 수석부회장, 감사의 선출 방식은 투표로 하며 참석자 과반을 득표한 자가 선정된다. 3인 이상 후보자가 있을 경우, 과반을 득표한 자가 없으면 최다 득표 2인 후보에 대하여 같은 방식으로 투표한다.
3. 부회장, 총무, 회계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의 추천으로 선임한다.
4. 회장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수석부회장이 회장을 대리한다. 직무대리의 임기는 회장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 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는 회계연도와 일치한다.

제 4 장 회 의

제 9 조(회의) 본회는 아래의 집회 기관을 둔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임원회의.

제 10 조(총회)

1. 정기총회는 년 1 회 회장이 소집한다. 그 시기는 회장 임기가 끝나는 시점을 전후로 2달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정회원 20명 이상의 발의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는 개최사실을 7일 이전에 공지한다.
4. 정기총회는 아래 사항을 토의한다.
 - 1) 본회 발전 계획 수립
 - 2)회칙 제정과 개정
 - 3) 예산 및 결산
 - 4) 기타 본회와 관련된 중요사항
1. 정기총회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2. 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으로 한다.

제 11 조(임원회의)

1.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감사로 구성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임원회의 개최는 연 1 회를 원칙으로 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임원회의에서는 아래 사항을 토의한다.
 - 1) 본회 발전 계획
 - 2) 기타 본회와 관련된 중요사항

제 5 장 재 정

제 12 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연회비, 평생회비, 사업수익금, 기부금,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1. 각종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2. 행사 진행 시 참가비는 별도로 결정하며 자발적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제 13 조(회계) 회계는 수입지출 현황을 기록 정리하여 총회 시 회원에게 보고한다.

제 14 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위원회와 기타

제 15 조(위원회)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기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회장 소관 하에 장학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16 조(회칙의 개정) 본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칙

1. 본 회칙은 2016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